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 檢 討 報 告 書

## 1. 제안경위

###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제출자	의안명
제440호	최봉희 의원 외 8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441호	최봉희 의원 외 6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다. 제출일자 : 2021년 12월 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2월 8일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2022.1.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고,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복무선서, 비상근무, 근무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1)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2)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3)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4)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5)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규정  
(안 제6조)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 1)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 규정(안 제1조 ~ 제2조)
- 2) 복무관리를 위한 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안 제3조)
- 3) 근무상황 관리, 출장의 절차(안 제4조 ~ 제6조)
- 4) 전자적 근무상황 관리(안 제7조)
- 5) 부임 및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로 검토보고 드림.
-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2021.10.8. 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또한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복무선서의 내용(별표 1)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지 않고 휴식권을 보장하게 하였음.
- 안 제5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경조사휴가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휴가를 정하였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 중 본 조례안에 추가된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집행부인 영등포구의 특별휴가와 일치시켰음.

가. 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안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나.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공무원 대상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일수에 대한 수업휴가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 5일 이내
  - 군입영 확정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입영당일 1일
  -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 10일 ~ 20일
  - 임신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시 최소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
  - 본인 생일 해당월 자기계발휴가 : 1일
- 안 제6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를 별표3에 규정하였음.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와 제4조는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휴가의 절차, 안 제6조는 출장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와 규칙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공무원법 [2022.1.13. 시행]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도의회 사무처장,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2.1.13. 시행)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

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